

# 국제전자자금이체시스템에서 지급의 최종성과 유용성에 관한 고찰

(미국의 전자금융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Payment Finality and Usefulness in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Based on U.C.C. 4A-

이병렬(Byeong-Ryul Lee)

부산대 강사

## 목 차

I. 서 론	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II. 지급의 유형과 최종성	참고문헌
III. 최종지급과 지급지시의 승낙	Abstract
IV. 지급의 최종성의 유용성	

## Abstract

In connection with a non-cash payment through the banking system, "finality of payment" has acquired diverse meanings.

In accordance to Section 4A-209(2), the acceptance by the beneficiary's bank by means of receiving payment "pursuant to section 4A-403(a)(1) or 4A-403(a)(2)," constitutes final settlement through a Federal Reserve Bank or through a funds-transfer system" or credit to the account of the beneficiary's bank. Above of all, Acceptance by beneficiary's bank is the most important. According to 4A-209(b), the beneficiary's bank can accept a payment order in one of four ways :

First, by paying the beneficiary; obligating itself to pay the beneficiary or,

Second, by notifying the beneficiary of receipt of the order or notifying the beneficiary that its account was credited or,

Thirdly, by receiving full payment from the sender's order or

Lastly, by passage of time, i.e., the opening of the next funds transfer business day of the bank following the payment date of the order.

A beneficiary's bank is considered to have accepted a payment order when the earliest of the four means of acceptance occurs.

Key Words : EFT, Beneficiary's bank' acceptance, Payment Finality, Originator's bank's acceptance

## I. 서 론

전자자금이체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들은 지급지시를 수신 및 전송함으로써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의무를 이행하여 그들이 면책받기 위해서는 자금이체가 완료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급의 최종성(payment finality)에 도달해야 한다. 은행을 통한 비 현금지급시스템에서 지급의 최종성은 수신은행(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아닌)이 수익자의 거래은행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수익자에게 지급을 이체함으로써 달성된다.

추심이체와 지급이체를 포함한 자금이체에서 최종지급의 달성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원지시인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가 완전히 청산되었다. 둘째 원지시인 및 수익자의 어떠한 통제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은행지급처리시스템의 최종단계에 도달하였다. 셋째 원지시인의 계정에서 과다 출금되어 수익자의 계정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넷째 원지시인은 거래를 취소하기 위하여 지급을 중지할 수 없다. 따라서 더 이상 결제위험은 발생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마지막으로 원지시인에게 수익자에 대한 그의 채무의 면책시점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지급이 최종성에 도달하였다고 해서 자금이체가 완전히 완료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CHIPS(The 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 정산소 은행 간 결제시스템)의 DNS(Deferred Net Settlement; 차액결제)인 경우에는 지급의 최종성을 중앙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에 지급의 최종성은 자금이체의 완료(complete)에 앞서 발생하기도 한다.<sup>1)</sup> 즉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이 제공하는 담보를 이용하여 결제위험을 제거함으로서 전송은행의 의무를 대신하여 결제한다면 결제완료 이전에 최종성은 발생될 수 있다.<sup>2)</sup> 중앙은행이 전송은행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이 지급지시를 승낙하는 시간과 결제를 완료하는 시간 사이에 일시적 갭이 존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위험과 신용위험을 제거시키기 위함이다.<sup>3)</sup>

1) CHIPS시스템도 최근에는 결제위험을 제거시키기 위하여 하이브리드(hybrid) 시스템으로 전환 한 바 있다 ; Stephanie Heller, "The New CHIPS: Intraday Finality-Revolutionary or Evolutionary?", Banking & Finance Law Review, Vol.18, 2002/2003, pp.403-404.

2)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총액결제시스템(RTGS)에서는 지급의 최종성과 완료성이 주로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RTGS시스템에서 조차도 각 지급이 처리되어 결제되는 과정에서 지급처리와 그 시스템으로의 지급이체되는 시간사이에 래그(lag)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어 가끔 이와 같은 위험들에 노출된다.

3) Benjamin Geva, "Settlement Finality and Associated Risks In Funds Transfers-When Does Interbank Payment Occur?", Penn Stat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22, No.1, Summer 2003. p.41.

그러나 CHIPS시스템에 참가한 회원은행이 뉴욕에 기반을 둔 대규모 은행(예를 들면 시티 그룹)인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회원은행들이 파산 및 영업의 폐쇄 등 다양한 사건으로 그들의 결제의무를 불이행하여 지급의 최종성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연방준비은행이 그 결제금액이 거액이라 결제부족분을 보충할 수 없이 지급의 최종성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시스템에 참여하는 여러 은행들 즉, 수익자의 거래은행, 원지시인, 원지시인의 거래은행, 그리고 다른 참가자간에 이 시스템에서 발생한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전자자금이체에서 지급의 최종성의 달성이여부는 참가자들간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발생시킨다. 또한 지급의 최종성이 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이 완료되거나 지급이 완료되지 못한 가운데 지급의 최종성이 달성됨으로써 전자자금이체에 참여하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보다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당사자간에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sup>4)</sup>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의 최종성이 달성되지 아니하고서는 원지시인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장 우수한 제도적 기반과 높은 기술적 수준을 갖추고 미국 전역에 전자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에서 당사자간의 의무이행과 면책을 제공하는 기준인 지급의 최종성과 유용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지급의 최종성이 달성되는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원지시인과 수익자간에 다양한 채권 및 채무의 청산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고의 연구 효과를 제공시키기 위하여 미국 거액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의 관련조항과 판례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측면만을 연구하고자 한다.

## II. 지급의 유형과 최종성

### 1. 지급의 유형

전자자금이체에 참여하는 원지시인은 자금이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수신은행이 그의 지급지시를 이행을 한 경우, 이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지시인의 지급의무는 자금이체의 최종성이 달성될 때 면책된다. 그러나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

4) 은행의 파산 및 지급착오를 정정할 권리의 박탈 등으로도 지급은 완료될 수 있다.

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 지급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서 원지시인은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의 이행에 따른 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면책되거나 또는 자금환급보증(money-back guarantee)에 따라 이미 전송한 자금을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sup>5)</sup> 정상적으로 자금이체가 최종성에 도달하기 위한 가능한 지급방법은 크게 은행간 지급과 상계(setoff)를 통한 지급 등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1) 은행간 지급

은행간 지급도 다음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첫 번째 유형은 수신은행이 연방준비은행 또는 지급이체시스템을 통하여 최종결제를 수취하자마자 발생한다.<sup>6)</sup> 두 번째 형태의 은행간 지급은 전송은행이 수신은행의 계정에 지급을 이체함으로서 발생된다. 이 형태의 지급은 전송은행이 지급이체 한 금액이 출금될 때, 또는 출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급이체 한 금액이 출금가능한 날의 한밤 중, 그리고 수신은행이 그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sup>7)</sup> 만약 지급의 지연이 발생한 상태에서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수익자의 계정으로 지급이체 된 금액을 수익자가 출금할 시간이 없거나, 수익자가 자기의 계정으로 지급이체 된 자금을 이용하기 전에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또한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지급지시를 거절 할 수 있다.

세 번째 지급의 형태는 수신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전송자의 계정에서 자금을 출금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지급의 형태는 출금이 이루어진 시점과 동시에 발생한다. 정상적인 출금은 해당계정에 출금가능금액 만큼의 잔고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유형의 지급은 수신은행이 전송자의 계정에서 초과출금(당좌대월)을 가능하게 하여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출금이 될 수도 있다. 일시적인 출금이란 정해진 기간이 없어 임시적이며 조건부 지급을 의미한다. 이 형태의 지급은 수신은행이 수신한 지급지시를 이행하여 승낙하는 경우에 최종적인 지급이 된다.<sup>8)</sup> 만약 일시적으로 출금한 이후에 담보제공 및 추가입금과 같은 어떤 추가적인 행위도 취하지 않았다면 해당지급지시는 자동적으로 취소되고 출금은 원상회복 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일시적인 출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송자가 담보가 부족한 경우, 수신은행은 수신은행에 개설된 전송자의 계정에서 출금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출금

5) <http://www.law.cornell.edu/UCC/4A/>, 10 August, 2010.

6) 여기서 자금이체시스템은 전송은행의 지급지시를 수신하고 전송하는 은행연합회, 자금이체네트워크, 자동정산소, 정산소의 다른 통신시설을 의미한다 ; 제4A편-403(a)(1).

7) 제4A편-403(a)(2).

8) 수익자의 거래은행 외의 수신은행은 지급지시를 이행함으로서 승낙한다. 그리고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승낙은 수익자에게 지급 또는 지급을 통지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이 발생된다면 출금을 함으로서 발생된 지급에 대하여 전송자가 지급을 하여야 한다. 또한 초과출금이 발생하여 원지시인이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그 담보의 유용성과는 관계없이 수신은행은 전송자에게 지급의무를 면책시켜준다. 그러나 초과출금에 대하여 전송자가 재 지급하던지 아니면 전송자에게 신용을 확장시켜주는 것과 같은 형태의 출금담보는 지급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번째 지급형태에는 은행계정으로 지급 및 출금을 제외한 보다 널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행된 지급방식이다.<sup>9)</sup> 예를 들면 은행어음을 발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 또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급시기는 지급의무가 충족될 때 결정된다.

## 2) 상계를 통한 지급

상계를 이용한 지급형태는 어떤 은행이 다른 은행에게 이행하여 할 결제의무를 일반적으로 매일 은행영업일말에 이행한다는 약정 하에 지급지시를 교환하는 은행들에 적용된다.<sup>10)</sup> 이 유형의 지급은 어떤 은행이 전송한 모든 지시금액은 다른 은행이 전송한 모든 지시금액과 상계되는 정도까지 지급하여 처리하고 최종 잔액만 각 은행 간에 결제된다.

상계를 통한 최종지급은 참가자간에 양자적 또는 다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경우 이던 동 형태의 최종지급은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의 규칙이 허용하는 정도 내에서 수신은행의 수신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수신은행이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 지급지시의 금액을 상계시킴으로써 전송자는 남아있는 채무 잔액만 지급하면 된다.

여기서 시스템규칙이 허용하는 정도까지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전송자는 양자적인 상계시스템을 통하여 수신은행이 전송한 지급지시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참가자 A가 참가자 B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의 양자적 출금잔고의 총계는 참가자 B가 참가자 A에게 채무를 진 양자적 지급잔고의 총 금액을 상계함으로서 참가자 A와 B의 지급의무는 면책된다. 둘째 다자적인 결제시스템에서 전송자는 자금이체시스템에 참여하는 각 수신은행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총 채무 잔액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참가자들이 전송자에게 부담해야 할 총 채무 잔액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송자와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각 참가자들간에 채무를 다자적으로 상계함으로써 지급의무가 면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종지급은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이 그들의 지급의

9) 제4A편-403(d).

10) 제4A편-403(b)(C).

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상계할 권리를 행사한 이후에 남아있는 채무 잔액을 결제함으로써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한다.

## 2. 지급의 최종성

전자자금이체에서 지급의 최종성<sup>11)</sup>에 도달하는 시점은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수신은행간 거래일 경우 지급의 최종성은 다음의 4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한다. 첫째 전송은행이 수익자의 거래은행에게 지급을 이행할 것, 이 시점에서 전송은행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대한 지급의무가 면책된다.<sup>12)</sup> 둘째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전송은행의 지급지시를 수신할 것, 셋째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의 계정으로 지급지시의 금액을 지급이체하고 그 사실을 통지할 것, 마지막으로 *The Brimnes, Tenax Streamship Co. Ltd. v. The Brimnes (Owners)* 사건<sup>13)</sup>에서처럼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의 계정으로 이체된 자금을 수익자가 즉시로 이용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한을 양도받으면 지급의 최종성은 발생된다.

다음 자금이체시스템 또는 정산소를 통하여 수익자의 거래은행에게 이체되는 은행간 지급은 해당시스템을 규율하는 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도 지급이체와 추심이체에 따라 구분된다. 우선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개설된 전송은행의 계정에서 지급이 이체된 은행간 지급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통지하는 지급지시를 전송은행으로부터 수신하자마자 발생한다.<sup>14)</sup> 그리고 전송은행의 계정에서 추심이체된 은행간 지급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출금을 결정하는 대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sup>15)</sup> 이처럼 지급지시의 최종성의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승낙이다. 또한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지급지시의 승낙은 첫째 수익자에게 지급 또는 지급통지<sup>16)</sup>, 둘째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전송자로부터 지급통지를 수신할 때 발생한다.

11) Benjamin Geva, "Payment finality and discharge in Funds Transfers", Chicago-Kent Law Review, Vol 633, 2008, pp 8-9.

12) Benjamin Geva, *Ibid.*, p.45.

13) (1973)1 All E.R. 769,782(Q.B.D.).

14) Afovos Shipping Co. SA v. Pagnan, (1980)2 Lloyd's Rep. 469,473 (Q.B), rev'd on other ground , (1982) 3 All E.R. 18 (A.C.) aff'd (1983) 1 All E.R. 449 (H.L.).

15) *The Brimnes, Tenax Streamship Co. Ltd. v. The Brimnes (Owners)*, (1973) 1 All E.R. 769, 784 (Q.B.D.) aff'd, (1974) 3 All E.R. 88 (A.C.); *Momm*, (1976) 3 All E.R. at 598.

16) 통지는 은행이 지시를 거절한다는 내용이 아닌 한 수익자의 계정으로 지시금액을 지급이체를 하였거나 전송자로부터 지급을 수취할 때까지 지급지시의 금액이 사용되거나 출금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제4A편-209(b)(1).

### III. 최종지급과 지급지시의 승낙

#### 1.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승낙

##### 1) 승낙의 시점

최종지급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승낙으로 도달될 수 있다.<sup>17)</sup> 또한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지급지시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첫째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수익자의 계정으로 지급이체, 둘째 전자자금이체시스템 또는 연방준비은행을 통하여 지급이체를 함으로서 가능하다. 어떤 경우이던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그와 같은 지급을 수신할 때 승낙이 발생한다.<sup>18)</sup> 그러나 승낙시점은 지급을 수신하는 시점 이후가 된다. 이 경우 승낙은 지급지시의 수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거나 전송자의 자금을 보유하게 하는 복합적인 효과를 가진다. 즉 승낙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개설된 전송자의 계정에서 자금을 출금할 권리를 가지게 할 뿐 아니라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취한 지급지시의 금액을 보유함으로서도 가능하다.<sup>19)</sup> 만약 그때 전송자의 지급지시의 금액이 전송자의 수권된 계정에 출금가능금액이상으로 충분히 남아있거나 해당은행이 전송자로부터 충분히 자금을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적절히 지급지시를 거절하지 않는 한, 지급지시의 승낙은 자금이체 익일 영업일 개시 시점에 발생한다.

##### 2) 승낙의 방식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다음의 4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급지시를 승낙할 수 있다. 첫째 수익자에게 지급, 둘째 수익자의 계정에게 지급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지급지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수익자에게 통지, 셋째 전송자로부터 지급지시의 금액을 완전히 수취, 마지막으로 지급지시의 지급일 다음 자금이체영업일 개시일 등 4가지 중 가장 빨리 발생하였을 때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지시의 승낙은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sup>20)</sup>

17) <http://www.frbreservice.org/fedwire/index>, 09 August, 2010.

18) 제4A편-209(b)(2).

19) 승낙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수익자의 계정에 지급하기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 제4A편-209(b)(2)(3).

20) 제4A편-209(a)항은 은행이 수익자의 계정에 지급이체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209(b)항은 지급이체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First Security Bank of New Mexico v. Pan American Bank사건<sup>21)</sup>에서 제10순회법원은 수익자의 계정으로의 지급이체는 4A편-405(a)(iii)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낙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뉴멕시코 제일은행(First Security Bank of New Mexico)은 스톤 은행(Stonebanks)의 계정에 지급이체 하라는 지시를 수신하는 즉시 지급을 승낙하였다. 따라서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지급지시의 금액을 뉴멕시코 제일은행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본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송자가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전송한 지급지시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을 함으로서 지급지시를 따를 때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승낙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sup>22)</sup>

둘째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제4A편-405(a) 및 (b)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을 하는 대신 지급지시를 수신한 사실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계정으로 지시금액을 지급이체 받았음을 통지하였다면 지급지시를 승낙하였음이 인정된다.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일반적으로 지급지시를 수신하는 대로 수익자의 계정에 지급을 이체한다. 수익자의 계정으로의 지급이체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지급한 금액을 출금할 권리를 수익자에게 통지할 때 또는 자금을 수익자가 이용가능하게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 자금을 수익자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4A편-405(a)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에 해당된다. 자금의 지급이체는 수익자에게 출금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수익자에게 ‘이용 가능한 자금’으로 전환된다. 일부 경우에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자금을 수신하기 이전에 수익자에게 자금을 출금할 권리를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지급지시의 전송자로부터 지급지시의 전체금액을 수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이용할 권리를 수익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의 계정에 지급을 이체하는 행위만이 수익자가 ‘이용 가능한 자금’에 해당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수익자에게 이체된 자금을 출금할 권리에 대하여 통지한다.

셋째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는 더 기본적인 방법은 전송자로부터 지급지시한 금액 전부를 수취하는 일이다.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전송자로부터 지시금액을 수취를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해당 지급지시를 승낙해서는 안된다. 만약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전송자의 지급지시의 전체금액을 수취하였다며 어떠한 위험과 손실도 없이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수익자에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 제4A편-209(b)(2)항에 따르면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지급지시의 승낙은 전송자의 지급지시의 전체금액을 제4A편-403(a)(1)항 또는 제4A편-

21) 215 F.3d 1147(10th Cir.2000).

22) 제4A편-209(b)(1)항에서는 은행은 제4A편-405(a) 및 (b)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을 함으로서 지급지시를 승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03(a)(2)항에 따라 수신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3)</sup>

또한 4A편-209(b)(2)항에서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승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급지시의 전송자는 은행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금이체가 은행시스템을 통하여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이체의 원지시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급지시의 전송자는 은행이어야만 지급의 최종성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자금이체의 참가자 중 은행이 지급지시의 전송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조건의 유일한 예외는 원지시인이다. 비 은행전송자인 자금이체의 원지시인이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원지시인의 거래은행 역시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되기 때문에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승낙이 불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지급지시는 승낙될 수 있다. 지급지시의 승낙이 무(無) 행위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제4A편-209(b)(2)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전송자로부터 지급지시의 전체금액을 수취하여야 한다.<sup>24)</sup> 이 조항은 전송자가 은행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첫째,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전송자가 그의 수신은행에게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계정에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방법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한다. 둘째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전송자의 은행계정에 지시금액이 출금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4A편-209(b)(3)항은 상기 경우 중 하나의 경우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지급지시의 지급일 이후 다음자금이체영업일 개시시점에 지급지시를 승낙한다.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다음자금이체영업일 개시시점 이전에 지급지시를 성공적으로 거절함으로서 승낙을 회피할 수 있다.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제4A편-209(b)(3)항에서 승낙할 때를 결정하기 위하여 은행은 지시의 지급일을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지정된 날짜 이전에 지급지시를 수신한다면 지급지시에 지정된 날짜가 지급일이 될 것이며, 또는 만약 어떠한 지급일도 지정되지 않았거나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지정된 날짜 이후에 지시를 수신하였다면 지급일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지시를 수시한 날이 된다.

23) 제4A편-403(a)(1)항에서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자금이체시스템 또는 연방준비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수취할 때 전송자의 지급지시의 금액을 수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A편-403(a)(2)항에서는 전송자가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계정에 지급을 이체할 때, 또는 다른 은행에 있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계정으로 지급이체하거나 만약 지급이체 된 자금이 출금 가능한 날 및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그 사실을 인지한 날 한밤중에 지급이체 된 금액이 출금되었다면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전송자의 전체 지급지시금액을 수신한 것으로 인정된다.

24) 제4A편-209(b)(3)항에서는 만약 전송자의 수권된 인출가능채권계정의 잔액이 전체지시금액 이상으로 남아있거나, (i) 지시가 1시간 이내 또는 (ii) 전송자의 지급일 다음 영업일 개시시점 이후에 1시간 이내에 거절되거나 그 시간 전에 거절되지 않는 한, 은행이 전송자로부터 지급지시의 전체금액을 수신한다면 승낙은 지급일 이후 다음 은행 영업일 개시시점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승낙의 효과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면 수익자에 대한 채무로서 수익자의 계정으로 지급지시의 금액을 지급이체(즉 수익자에 대한 지급 및 통지와 전송자로부터 지급의 수취)해야 한다.<sup>25)</sup> 그러므로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승낙하면 원지시인이 수익자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면책되는 반면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에 부담해야 할 채무는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의 발생은 지급지시의 승낙의 결과이며 또한 승낙의 형태를 구성하기 때문에 지급의 최종성에 해당된다.<sup>26)</sup>

또한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의 계정으로 지급이체함으로서 지급지시를 승낙하면 첫째 수익자가 그 자금을 출금할 권리를 통지받은 정도까지 둘째 은행이 적법하게 수익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그 자금을 이용할 때, 셋째 수익자가 수신한 지급지시의 금액을 이용가능하게 될 때 지급의 최종성이 달성된다.<sup>27)</sup> 심지어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전송자로부터 결국 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한 자금은 수익자로부터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면 그 법적효과가 수익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전송자로부터 지급을 수취하기 이전에 수익자에게 지급이체하거나 또는 이의 사실에 대한 무자격의 통지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에게는 결제위험으로 남는다.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대한 전송자의 결제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수익자에게 지급이체는 최종적이며 취소불가능하다.<sup>28)</sup> 이 과정에서 수신자의 최종성의 효과가 발생한다. 즉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자금이체과정에서 지급지시의 금액이 수신될 것을 기다리지 않고 수익자에게 지급이체를 한다면 결제실패의 위험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의 최종성은 달성됨을 의미한다.<sup>29)</sup> 이 경우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지급지시의 승낙을 자연시킴으로써 결제실패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만약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전송자로부터 지급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자금을 수익자로부터 반환받을 권리를 수익자의 거래은행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익자에게 해당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획득하던지 또는 지급조건에 포함시켜야만 가능하다.

25) Foley v. Hill. (1848) 2 H.L.C. 28, 45, 36-37; 9 Eng. Rep. 1002, 1005-06, 1009.

26) Benjamin Geva, *ibid.*, pp.7-8.

27) 제4A편-405(a).

28)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해당 전송자로부터 지급 및 자금을 수신하기 이전에 수익자에게 지급을 한 경우,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승낙에 의한 자금이체의 완료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에게는 결제의 부족을 야기 시킨다. 이 위험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결제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급지시를 수신하는 RTGS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은 위험이다.

29) 제4A편-405(c).

## 2. 중계은행 및 중계기관의 승낙

### 1) 승낙의 시점

자금이체시스템 또는 연방준비은행과 같은 중계은행 및 중계기관을 통해서도 최종지급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지급의 최종성은 은행간 지급의 한 당사자로서 중계은행도 수익자의 거래은행이나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아니지만 수신은행으로서 지급지시를 수신하고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달성 될 수 있다. 즉 중계은행도 수신한 지급지시를 이행할 때 지급지시를 승낙할 수 있다. 중계은행이 지급지시를 이행한다 함은 수신된 지급지시를 이행할 의도로 지급지시를 다음의 참가자(수신은행)에게 전송한다는 의미이다.<sup>30)</sup> 중계은행이 수신된 지급지시를 이행할 의도로 전송하는 한 중계은행의 승낙은 발생한다. 심지어 중계은행이 전송한 지급지시가 이행되지 아니할지라도 지급지시는 승낙된다.

### 2) 승낙의 방식

이 방식도 지급지시를 수신하는 시스템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승낙이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운영하는 총액결제시스템인 Fedwire(이하 패드라 함)를 통하여 지급지시를 수신하고 이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자금이체를 규율하는 「규정 J subpart b」에서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31)</sup> 연방준비은행을 통하여 결제하기 위해서는 지급지시의 전송자와 수신은행은 연방준비은행에 그들의 계정을 개설하여야 한다.<sup>32)</sup> 만약 지급지시가 연방준비은행을 통하여 전송자에서 수신은행으로 전송되었다면, 지급지시는 정상적으로 패드를 통하여 전송될 것이다. 연방준비은행이 패드를 통하여 수신한 각 지급지시는 즉시 전송자의 계정에서 출금하여 수신은행의 계정으로 지급이체를 해야 한다.<sup>33)</sup> 지급은 수신은행의 계정에 지급이체 되는 시점에 발생한다. 비록 수신은행의 계정에 지급이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급지시의 승낙은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수신할 때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연방준비은행이 아닌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지급지시의 승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결제하기 위해서도 지급지시의 전송자와 수신은행은 자금이체시스템의 참가자가 되어야 한다. 자금이체시스템이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면서 연방준비은행이 운영하는 패드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sup>34)</sup> 그러므로 패드를 통한 최종결제가 연방

30) 제4A편-301 comment 1.

31) <http://www.fbservices.org/regulation>, 20 July, 2010.

32) <http://www.federalreserve.gov>, 01 August, 2010.

33) 제4A편-403 comment 1.

준비은행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한 자금이체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최종지급과는 다르다.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한 최종지급은 「CHIPS 규칙」과 같은 자신의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제정된 규칙에 의해서 규율된다.<sup>35)</sup>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한 최종지급은 결제가 시스템규칙과 일치하여 완료될 때 수신은행이 수신한다.<sup>36)</sup> 다자간 네팅에 참여하는 당사자간 최종지급은 송신은행의 의무를 면책시킨다는 점에서<sup>37)</sup> 결제절차가 실제로 완료되기에 이전에 중앙은행이 지급을 보증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다.

### 3) 승낙의 효과

연방준비은행을 통한 최종지급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계정에 지급이체가 될 때 즉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급지시의 승낙은 수신은행(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지급지시를 수신할 때 까지 발생할 수 없다.<sup>38)</sup> 그 이유는 수신은행에게 지급해야 할 연방준비은행의 지급은 수신은행의 계정에 지급이체되는 시점보다 일찍 발생하거나 지급지시가 수신은행에게 전송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준비은행을 통한 최종 결제는 수신은행의 준비은행에 있는 계정에 지급 또는 통지함으로서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결제는 즉시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수신은행의 계정에 지급하는 형태로 연방준비은행 외 다른 은행의 의무는 지연되지 않는다.

연방준비시스템에서 전송은행과 수신은행은 서로 다른 연방준비은행에 그들의 계정을 보유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연방준비은행이 내린 조치에 따라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총액결제시스템에서 송신은행(originator's bank)과 지급은행(beneficiary's bank)은 동일한 중앙은행에 그들의 계정을 보유하기 때문에 최종지급은 송신은행의 계정에서 자금을 출금함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CHIPS(또는 칩스)와 같은 자금이체시스템을 이용한 최종지급은 당일 말에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 칩스의 참가자는 지급지시의 전송자이자 지급지시의 수신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금의 채무자이자 채권자가 된다. 칩스가 총액결제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지급지시를 수신하는 대로 지급하기 보다는 각 지급지시를 당일 말에 일괄상계하여 차액만 전송한다. 중앙 컴퓨터는 이를 지급지시를 기록하고 당일 말에 모든 참가자들의 순 채

34) <http://www.federalreserve.gov/pubs/bulletin, 07 August, 2008.>

35) 이 규칙은 은행연합회의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지급지시의 전송 및 지급지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36) 제4A편-403(b); 최종결제와 관련하여 완료(Completion)에 대해서는 제4A편에서는 어디에서도 정의가 없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볼 때 완료는 결제를 이행하는 은행처리의 완료라고 추정할 수 있다.

37) 이병렬·이천우, “은행간 온라인 결제시스템에서 결제실패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제20권 21호 2005.3, pp.157-158.

38) 제4A편-209(c).

무포지션과 순 채권포지션을 결정한다. 순 채무자인 각 칩스 회원들은 패드를 통하여 뉴욕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칩스의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야 한다. 모든 채무자들이 자금의 결제계정에 자금을 제공한 이후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패드를 경유하여 순 채권자의 계정에 지급이체 할 것을 지시받을 것이다. 모든 자금이 패드를 통하여 방출되어 지급되면 최종 지급은 발생한다.<sup>39)</sup>

요약하면 만약 연방준비은행이 패드를 통하여 지급지시를 수신을 받는다면 연방준비은행은 전송자의 계정에서 즉시 출금하여 수신은행의 계정으로 지급이체 해야 한다. 지급은 수신은행의 계정으로 지급이체 될 때 발생된다.<sup>40)</sup> 그러나 승낙은 지급지시를 수신한 이후에만 발생될 수 있다. 반대로 지급지시가 칩스와 같은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다면 최종지급은 해당계정에 지급이체하거나 지시를 수신하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순 채권자에게 지급될 때인 당일 말에 발생한다. 만약 전송자와 수신은행이 연방준비은행이나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그들의 의무를 결제하지 않는다면 지급은 일반적으로 전송자가 수신은행의 계정에 지급이체 할 때 발생하거나, 또는 수신은행이 그 채권을 출금할 때 발생한다. 만약 수신은행이 그 채권을 인출하지 않는다면 지급은 수신은행이 그 채권이 출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의 한밤중에 발생한다.

### 3.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의 승낙

보편적으로 지급지시의 승낙은 수신은행이 그 지시를 수신하기 전에는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의 경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즉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의 거래은행일 경우와 아닐 경우에 따라서 지급지시의 승낙의 방식(시점)과 효과는 달라진다. 먼저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역할을 한다면 그가 전송한 지급지시는 지급일에 승낙되지만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행일까지 승낙될 수 없다. 즉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의 거래은행이라면 승낙은 일반적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할 때 발생한다. 하지만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아닐 경우, 원지시인이 중계은행으로 취급받는다면,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의 승낙은 일반적으로 지급지시의 이행일에 발생한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정된 이행일과는 상관없이,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아닌 수신은행(수익자거래은행)은 지급지시를 이행함으로서

39) Fred H. Miller & Alvin C. Harrell, "The Law of Modern Payment Systems and Notes," West Group a Thomson Company, 2008, pp.431-435.

40) 12 CFR 210.31.

승낙하는 반면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지급지시의 이행일 또는 지급일 전에는 지급지시를 승낙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수신한 지급지시를 조기이행하거나 이행을 지연시킬 경우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기이행이던 이행지연이던 간에 지급지시를 이행하는 날이 지급지시의 승낙일이 된다. 따라서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지급일과 상관없이 수익자에게 지급을 하거나, 중계전송자로부터 지급지시의 금액 전체를 수신한다면 지급지시의 승낙으로 인정된다. 지급지시의 전송자는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정상적으로 승낙한다면 그 자금에 대한 권리는 전송자에서 수신은행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역할까지 할 경우에는 이행일과는 관계없이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승낙하는 날이 지급의 최종성에 도달하는 시점이 된다. 그러나 지급의 최종성은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아니라면 지급지시를 승낙을 하더라도 이행일까지는 달성이될 수 없다.

## IV. 지급의 최종성의 유용성

### 1. 원지시인의 지급의무 면책

지급의 최종성은 일반적으로 수신은행의 승낙으로 발생되며 이는 수익자에 대한 지급으로 연결되어 결국 수익자에 대한 원지시인의 의무를 면책시킴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지급지시의 승낙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이다.<sup>41)</sup> 따라서 계약위반이나 수익자에게 손실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닌 한,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지급지시의 승낙을 통한 지급으로 수익자에 대한 원지시인의 의무는 면책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원지시인의 계정에서 수익자의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면 원지시인의 의무는 면책된다고 판시한 Royal Prods. v. Midland Bank사건<sup>42)</sup>에서도 확인되었다. 면책되는 금액은 은행어음이나 지폐로 결제함과 동일한 금액으로 수익자에게 지급이체 된다.

그리고 Mardorf Peach & Co. v. Attica Sea Carriers Corp. of Liberia(The Laconia)사건<sup>43)</sup>에서 법원은 수익자를 위하여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은행어음이나 지폐로 수익자에게 지급을 하는

41) 지급 금액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승낙한 금액과 동일하지만 원지시인이 지시한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 제4A편 -406(a).

42) (1981)2 Lloyd's Rep. 194, 1980(Q.B.D.).

43) (1976)2 All E.R. 249,257(appeal taken from Q.B.D.), rev'd, (1977) 1 All E.R. 545 (H.L).

것도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계정을 개설해놓고 있는 수익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경우에도 지급의 최종성에 해당되어 원지시인의 채무는 면책이 된다.<sup>44)</sup> 따라서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개설된 수익자의 계정으로의 지급이체는 수익자에게 자금을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원지시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지급지시의 최종성이 달성되면 원지시인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수익자의 거래은행으로의 지급이체는 상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연방준비은행을 통하여 최종결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신은행이 수신은행에 개설된 전송자의 출금가능한 신용잔고에 지급지시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 2. 지급의 최종성의 실패

자금이체시스템에서 수신은행을 통하여 지급이체를 하였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지급의 경우는 지급의 최종성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첫째 특별한 대부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준 경우, 둘째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지급지시를 수신하였다는 사실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계정에 지급이체함이 없이, 전송자로부터 자금이 수취할 것을 예상하고 수익자의 계정에 자금을 미리 방출한 경우, 셋째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에게 전송자로부터 지급지시를 수신하고 해당 지급지시금액을 수익자의 계정에 지급을 이체한다는 사실을 통지 한 경우, 넷째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자금을 전송자로부터 자금을 수취할 때까지 수익자가 본인계정에 이체지급 된 해당자금을 출금 및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는 만약 수익자의 계정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수익자의 계정으로 잠정적이거나 조건부적으로 지급이체 한 것도 아니라면 수익자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전송은행과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수신자최종성을 규율하는 전자자금이체시스템에 참여할 경우에도 지급의 최종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예외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일괄적(목음)적으로 지급지시를 수신하는 ACH(자동정산원)시스템에 적용되고 지급지시가 전송될 때마다 자금이 이체되는 총액결제시스템을 채용하는 패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간에 의무를 상호적으로 네팅하는 칩스와 같은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은 손실분담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자체의 규칙에 의하여 최종지급에 도달

44) A/S Awilo v. Fulvia S.P.A. di Navigazione(The Chiluma) (1981)1 Lloyd's Rep. 371, 375 (H.L).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칩스가 참여자간에 손실분담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의 최종성과 완료성간의 갭(gap)으로 결제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차액결제시스템을 채택하였다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지시가 건 별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총액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인류는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해오면서 다양한 지급수단을 개발하여 이용해왔다. 초기의 물물교환시대에는 상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 그 자체가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점 인구가 증대되고 다양한 경제행위가 요구되면서 구체적인 지급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정금, 은행지폐 및 동전 등을 이용하여 상거래상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금속으로 만든 정금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휴대하기가 불편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지폐와 동전은 일일이 계산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종종 계산과정에서 착오로 당사자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들 지급수단들의 결정적인 한계는 Chamber v. Miller 사건<sup>45)</sup>에서 잘 알 수 있다. 즉 법원은 정금과 현금거래에서 수익자가 승낙하면 채무자의 지급의무를 면책시킬 수는 있지만 최종지급에 완전히 도달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원지시인의 지급의무의 면책은 원지시인과 수익자간의 관계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고 최종지급은 수익자와 거래은행간의 관계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지급수단들은 채무의 면책은 지급의 최종성에 도달하지 않아도 해결되었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제3자인 은행이 결제메카니즘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현대에 와서는 지급의 최종성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채무의 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떤 상거래에서 지급의 최종성을 달성하였다 함은 수익자의 계정에 예탁된 현금과 수익자의 채권이익을 일치시켜 수익자에 대한 원지시인의 채무를 해결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지급수단들에 표출된 지급의 최종성과 채무자의 지급의무 면책간의 분리문제는 전자자금이체의 이행을 통하여 대부분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전자자금이체는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약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했던 전통적인 자금의 이용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

45) (1862) 13 C.B.(N.S.) 125, 143 Eng. Rep. 50 (C.P.)

켜 원지시인과 수익자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이 은행처리과정과 의무면책시점간의 시간적인 갭을 채워서 현금과 동일하게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해주면서도 지급의 최종성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급의 최종성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함으로서 발생된다.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지급지시의 승낙은 첫째 수익자가 그 자금을 출금할 권리를 통지받은 정도 까지, 둘째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적법하게 수익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그 자금을 이용할 때, 셋째 수익자가 수신한 지급지시의 금액을 이용가능하게 될 때 효과가 발생하며 이때 지급의 최종성이 달성된다.<sup>46)</sup> 심지어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전송자로부터 결국 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한 자금은 수익자로부터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

본 고의 연구범위가 되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의 규율을 받고 있는 전자자금이체에서 지급의 최종성과 당사자간의 채권채무해결의 메카니즘은 기술적으로 완전하며 건실한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자금이체 중 지급이체메카니즘은 전자결제분야의 중대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동 시스템의 기술적인 분야를 제외한 제도운용과 적용측면에서 지급의 최종성 및 그 유용성을 분석함에 있어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전자자금이체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급의 최종성에 대한 다양한 용어정의 및 도달메카니즘을 한가지로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통일시켜야 한다. 즉 지급의 최종성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의 계정으로 지급이체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감소시켜야 한다. 둘째 제4A편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률적인 규정을 지급이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동정산원(ACH)과 같은 전자추심이체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즉 지급의 최종성을 보다 확대된 제도적인 구조아래 두계 되면 복잡하고 다양한 결제메카니즘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상호 연계된 지급의무의 면책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상거래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지급의 최종성은 통제할 수 없는 은행처리과정의 마지막에 달성된다. 이 경우 지급의 최종성과 지급의 완료성간에 갭(gap)의 발생으로 결제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 지급(provisional payment)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지급도 지급지시의 승낙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지급지시의 전송자로부터 자금을 수취하여 이행일까지 보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행일 이전

46) 제4A편-405(a).

에 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승낙할 수 있다.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승낙은 수익자가 그의 계정에 수취된 자금을 이용가능하게 만든다. 일시적인 지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의 계정에 지급을 하였지만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승낙을 할 때까지 자금을 출금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을 수익자에게 분명히 통지하는 의무를 수익자의 거래은행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법문사, 2008.

소현철, “전자금융거래법시행에 따른 감독방향 및 향후 추진과제”, 「신용카드」, 제40호, 여신금융협회, 2007.

이병렬, “기업간 전자자금이체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2.

\_\_\_\_\_, “한국과 미국의 전자결제제도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1권 제1호, 2009.3.

\_\_\_\_\_, “국제전자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의 책임 및 정책적시사점.”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2권 제1호, 2010.3.

이병렬 · 이천우, “은행간 온라인 결제시스템에서 결제실패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제20권 21호, 2005.3.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정대익, “무권한 전자지급시 위험분배원칙-전자금융거래법의 제9조의 비판적 검토”, 「경영법률」, 한국경영법률학회, 2008.

정찬형,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Vol.51, 2008.

Alces, Peter A. Payment Systems, West Publishing Co., 1996.

Brandon George and Jenkins Mary Ann, “The Limits of article 4A”, The Banking Law Journal, Vol. 121, Feb. 2004.

Croal, M & Weikart, E., “On the Elevator: Electronic Funds Transfer”, Credit Union Management, Vol.31, No.7, 2008.

Darmstadter, H., “Wired: Problems with Electronic Funds Transfer Agreement”, The Banking Law Journal, Vol.221, No.7, 2007.

- Dole. Richard F, "Receiving Bank Liability for Errors in Wholesale Wire Transfers", Tulane Law Review, Vol. 69, March 1995.
- Geva Benjamin, "Recent UCC Article 4A Jurisprudence: Critical Analysis", The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36, Fall 2003.
- \_\_\_\_\_, "Recent UCC Article 4A Development, 2003-2005",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38, No. 1, 2005.
- \_\_\_\_\_, "Settlement Finality and Associated Risks In Funds Transfers-When Does Interbank Payment Occur?", Penn Stat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22, No.1, Summer 2003.
- \_\_\_\_\_, "Payment finality and discharge in Funds Transfers", Chicago-Kent Law Review, Vol 633, 2008.
- Fred H. Miller & Alvin C. Harrell, "The Law of Modern Payment Systems and Notes," West Group a Thomson Company, 2008,
- Lary Lawrence and Bryan D. Hull, "Payment System", Chapter 13 Electronic Fund Transfer Act(EFTA) and Regulation E IV. Error Resolution Procedures, November 2009.
- Stephanie Heller, "The New CHIPS: Intraday Finality-Revolutionary or Evolutionary?", Banking & Finance Law Review, Vol.18, 2002/2003.
- Theresa Leming, J.D., Jack K. Levin, J.D., Eric Surette, J.D., Lisa A. Zakolski, J.D., Consumer and Borrower Protection, American Jurisprudence Second Edition, May 2009.
-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4A(2009-2010).
- <http://www.federalreserve.gov>, 01 August, 2010.
- <http://www.federalreserve.gov/pubs/bulletin>, 07 August, 2010.
- <http://www.frbreservice.org/fedwire/index>, 09 August, 2010.
- <http://www.frbservices.org/regulation>, 20 July, 2010.
- <http://www.law.cornell.edu/UCC/4A/>, 10 August, 2010.